

2025년도
임대형 민자사업(BTL) 한도액안

대한민국정부

1. 의결주문

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한도액(안)을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7조의2에 따라 2025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(BTL)의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전년도에 사용한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정부가 2025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(BTL)은 16,431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1) 국가사업 : 3,267억 원

○ 대학시설(기숙사, 시설개선) : 995억 원

○ 국방시설(군 주거시설, 교육시설 등) : 2,272억 원

2)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: 12,382억 원

○ 하수처리시설 : 2,787억 원

○ 하수관로시설: 9,595억 원

3) 예비한도액* : 782억 원

*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5% 수준을 계상

나. 정부가 2023년도에 지출한 예비한도액은 3,076백만원으로 구체적인 사용명세는 다음과 같음.

1) 국가사업 : 3,076백만 원

○ 대학시설

- 전북대 : 268억 원 → 279억 원
- 서울과기대 : 280억 원 → 293억 원
- 부산대 : 254억 원 → 260억 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1) 헌법 제 89조

2)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7조의2
(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)

「대한민국헌법」

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4. 예산안·결산·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·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
재정에 관한 중요사항
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

제7조의2(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)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
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(이하 “임대형 민자사업”이라
한다)의 총한도액,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
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(이하 “총한도액등”이라 한다)을
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,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
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
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
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교육부, 국방부, 환경부와 합의되었음.

라. 별 첨 :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한도액(안)

<별 첨>

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한도액(안)

< 주요 내용 >

1.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총한도액
2.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대상시설별 한도액
3.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예비한도액
4. 2023년도 지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

1.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총한도액

□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총한도액은 2024년 7,826억 원 대비 109.9% 증가한 16,431억 원

-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3,267억 원
-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한도액은 12,382억 원
- 예비한도액은 782억 원

<2025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(안)>

(단위:억원)

구 분	2024년(A)	2025년(B)	증감(B-A)	
				(%)
총한도액	7,826	16,431	8,605	109.9
◇ 국가사업	6,157	3,267	△2,890	△46.9
◇ 국고보조 지자체사업	1,297	12,382	11,085	854.7
◇ 예비한도액	373	782	409	109.7

2.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대상시설별 한도액

(단위: 억 원)

대상시설		사업수	한도액
☐ 국가사업			
① 대학시설	한국폴리텍대 - 경북권(427), 충청권(371), 경남권(197)	3개	995
② 국방시설	증평 병영시설(431), 계룡 간부숙소(938), 장성 교육시설 2차(903)	3개	2,272
소 계		6개	3,267
☐ 국고보조 지자체사업			
① 하수처리시설	대전시(1,022), 울릉군(1,765)	2개	2,787
② 하수관로시설	대구시(5,789), 삼척시(1,781) 청도군(2,025)	3개	9,595
소 계		5개	12,382
☐ 예비한도액 ¹⁾	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합계액의 5%	-	782
합 계		11개	16,431

1)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총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계상 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7조의2 제2항)

3.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예비한도액

□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의 예비한도액은 782억 원

-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한도액 15,649억 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

4. 2023년도 지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

□ 2023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은 3,076백만원

- 대학시설 중 '23년 전북대는 1,151백만원,
서울과기대는 1,304백만원, 부산대는 621백만원 사용
- 건물특성과 유사한 타 대학 사례 적정공사비 적용에 따른
공사비 충당을 위해 예비한도액 사용